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 ※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는 공통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동 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직종 명칭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가전제품 판매·점검, 가전제품 판매, 가전제품 점검 등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이하 '위탁자'라 함)과(와) ()이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용어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전제품 방문점검 :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위탁자가 취급하는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제품 소재지를 방문하여 제품 점검, 청소 필터교체 등의 활동을 하는 업무
2. 가전제품 방문판매 : 위탁자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또는 가전제품 방문점검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
3. 대여물품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수탁계약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비, 공구, 재료, 부품, 소모품 등으로 수탁자가 가전제품 방문점검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소모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물품
4. 수수료 또는 보수(이하 '수수료 등') :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처리의 대가로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한다.

1.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관련 업무
2. 가전제품 방문판매 등 계약 관련 업무(중개, 알선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부수적 업무

제5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 ② 계약기간 만료 ()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고 함)를 포함한다)으로 합의 또는 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수수료 등의 지급 등)

-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 대가인 수수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등의 항목 및 지급기준	가. (예: 건당 판매 수수료, 점검 수수료 및 관련 인센티브로 구성되며, 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름) 나.
2. 지급 시기/방법	(예: 위탁업무 수행 완료일로부터 0일 뒤 or 업무수행 완료 익월 00일, 계좌 입금)
3. 공제 내역/기준	가. (예: 사회보험료, 수탁자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분) 나.
4. 관련 기타 조건(특약)	(예: 수탁자가 지정된 방식으로 업무 종료 확인 내지 통보하는 조건, 판매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는 조건 등)

- ② 위탁자는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세부 항목 등 내역이 표기된 지급명세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본 계약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한 확인 결과를 ()일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자의 책무)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객정보, 제품 관련 정보 및 기본적인 물품(대여물품 포함)을 위탁 또는 제공한다.
- ② 본 조 정보, 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수행과 무관한 이유로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수탁자의 책무)

-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정한 기준 및 상호 합의한 방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이행한다.

-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 ①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 또는 제15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 변경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지급할 수수료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수수료 등을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 수행 환경이나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사전 고지 등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수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고객 조정, 일정 조정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고객정보관리 및 영업비밀준수 등)

-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정보 또는 영업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고객정보 및 영업자료를 위탁자 및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③ 수탁자는 위탁업무 목적 달성 또는 계약 종료 시 그간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다.
- ④ 수탁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에 따라 알게 된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위탁 및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14조 (대여물품의 관리 및 반환 등)

-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여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계약 종료 후 대여물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2. 수탁자가 업무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령상 면허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본 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적극 협조한다.
- ③ 위탁자는 자신의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17조 (분쟁 해결)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등에서의 조정, 화해,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18조 (안전보건 조치 등)

위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회보험 가입)

- ① 수탁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 ② 위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수료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제1항의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